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01.10(목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</li> <li>• ☎ (044) 201-3425</li> </ul>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**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%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**

- 매일경제신문(1.10(목))에서 보도한 역삼동 및 연남동 사례는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으로서,
  -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.
  
- 다만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상한이 50%로 제한되며,
  - 특히,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%가 감면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.
  
- 또한,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,
  - \* 작년 11월부터 복지부 등 유관기관 TF 구성을 통해 복지 수급기준 조정 등 검토 중
  -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,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, 공시가격의 유형·지역·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1.10(목).) >

◆ 노부부 “30년 산 집, 세금으로 빼앗나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욱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